

2016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 구분 | 순번 | 자문내용 | 비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 1 |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3건) | |
| | 2 | 민원사무처리 위반 사실 여부 관련 자문 | |
| | 3 | 징계시효 기간 관련 자문 | |
| | 4 | 공익법인법 관련 자문(3건) | |
| | 5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무처리 관련 자문(3건) | |
| | 6 | 학교시설 일조 측정기준과 관련 자문(3건) | |
| | 7 | 교사시국선원 관련 자문(2건) | |
| | 8 | 직무이행 거부에 따른 고발 관련 자문 | |
| | 9 |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에 따른 대상기준 관련 자문(3건) | |
| | 10 | 기간제교사 임금 청구 관련 자문 | |
| | 11 |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재심 청구 관련 자문(2건) | |
| | 12 | 사립학교 교장 인사처분 후속조치에 대한 자문(2건) | |
| | 13 | 교원노조 사무실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자문(3건) | |

| | | |
|----|---|--|
| 14 | 소송 결과에 따른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자문 | |
| 15 | 소송 판결에 대한 자문 | |
| 16 |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 관련 자문(3건) | |
| 17 | 사립학교 교원 인사처분 무효에 따른 인건비 재정지원 자문(3건) | |
| 18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적용에 관한 자문(3건) | |
| 19 | 교육금고 관련 자문(3건) | |
| 20 | 공사대금 관련 원도급 업체 및 원도급 준공금 압류 보관금 관련 자문(2건) | |
| 21 | 공사 준공금 정산 관련 자문(2건) | |
| 22 | 공사대금 채권 대금 지급 방법 자문(3건) | |
| 23 | 계약이행 중 사업 양수·양도로 인한 변경계약 관련 자문(3건) | |
| 24 |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관련 자문 | |
| 25 | 매각된 공유재산 내 매립된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자문(3건) | |
| 26 | OO지구 공유지분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 여부 자문(3건) | |
| 27 | 서비스 이용 규정 제정 관련 자문(3건) | |
| 28 | 준공대금 지급 관련 자문(3건) | |

| | | |
|----|--|--|
| 29 | 입찰 개찰 유효 여부 자문(3건) | |
| 30 |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자문(3건) | |
| 31 | 인쇄물·인터넷 광고 교습비등 미표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관련 행정처분 적용 여부 자문(3건) | |
| 32 | 학원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자문(3건) | |
| 33 | 학원설립 신청에 따른 자문(3건) | |
| 34 | 사립유치원 법률 위반 관련 자문(3건) | |
| 35 | 공사대금 지급 관련 자문(3건) | |
| 36 | 사실조회 회보에 관한 자문 | |
| 37 | 문서송부촉탁 관련 자문(3건) | |
| 38 |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자문(3건) | |
| 39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관련 자문(3건) | |
| 40 | 공사비 회수를 위한 소송 가능 여부 의뢰 | |
| 41 | 계약관련 자문 | |
| 42 |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자문 | |
| 43 | 민원 관련 자문 | |

| | | |
|----|-----------------------------------|--|
| 44 | 교직원 복무 관련 자문(2건) | |
| 45 | 학교발전기금 기탁 관련 자문 | |
| 46 |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자문 | |
| 47 | 초상권 관련 자문 | |
| 48 | 투서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법 자문 | |
| 49 | 사법기관 조사에 관한 자문 | |
| 50 | 학교시설물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자문 | |
| 51 | 학교시설물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자문(3건) | |
| 52 | 임차계약해지 사무처리 관련 자문 | |
| 53 | 용역계약만료 통보 관련 자문 | |
| 54 | 계약 체결 관련 법률 자문 | |
| 55 | 공사비 회수를 위한 소송 가능 여부 자문 | |
| 56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자문(2건) | |
| 57 | 시간강사 공상처리 가능 여부 자문 | |
| 58 | 계약사무 처리 관련 자문(3건) | |
| 59 | 기간제교사 급여채권 관련 자문 | |

| | | | |
|----|-----|---------------------|--|
| | 60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문 | |
| | 61 | 신입생 합격자 명단 공지 관련 자문 | |
| 총계 | 61건 | | |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 | [건명: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정」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심의사안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교권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사안을 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 시행령 제6조의2에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 시행령에서 심의할 대상인 유형을 더 상세하게 규정한 것일 뿐, 시행령에 의해 그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안이 개정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동 시행령에서 침해 유형에 따라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 2 | [건명: 민원사무 처리 위반 사실 여부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담당 공무원이 비운 사이 제3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민원서류를 임의로 복사해서 유출한 경우, 담당공무원을 징계 조치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담당 공무원이 누군가 해당 서류를 몰래 유출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음. |
| 3 | [건명: 징계시효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2010.8경 범행을 하였고, 그 이후 공무원 범죄 통보가 왔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가 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 4 | [건명: 공익법인법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법 제13조제1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로서 해당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관리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의 재산의 귀속주체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는 것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에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의 재산의 귀속주체에 해당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5 | [건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 <p>□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2017년 2월 시설 폐쇄가 예정된 바, 1986년부터 운영하면서 누적된 시설 운영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는지 여부</p> <p>□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인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청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운영비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운영비로 회수조치명령 할 권한이 교육청에게 있는지 여부, 회수 조치할 경우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기준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p> | <p>□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설운영비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u>보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비축하여 두었다면, 이는 개인 운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일부 개인 운영자의 금원이 혼합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음.</u></p> <p>□ 질의1의 답변에 따라 교육청 보조금이 일부 포함된 운영비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u>교육청의 회수조치 명령권한이 있고, 회수할 경우 매도액을 기준으로 회수해야 함.</u></p> <p>□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한 운영비가 누적된 경우 이를 교육청에서 <u>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회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음.</u></p> <p>□ 교육청은 운영비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운영비로 <u>회수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고, 이 경우 회수될 금액은 토지 매입비로 하되,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야함.</u></p> <p>□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은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일반적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2017.2 시설폐쇄가 예정된 시설은 그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므로, <u>교육청의 일반적 관리 권한의 행사로 기지급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u></p> <p>□ 지원비로 시설의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 그 개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 관리 권한으로 <u>교육청이 보조금의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매수액이 되어야함.</u></p>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6 | [전명: 학교시설 일조 측정기준과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 본관동 1층 체력단련실(과거 무용실)을 창고로 용도 변경 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 방법에 관한 규칙」 별표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시설로 보아 일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해당실이 현재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일조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향후에는 이를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으로써,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 방법에 관한 규칙」의 제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창고는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시설로서 일조에 장애가 있더라도 관계없고, 일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만드는 것이라는 본래적 속성이 있는 점과 규칙의 문구에 대응하는 정도의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 및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일조와 관계되는 교실을 창고로 개조하여 일조제한을 피해가는 편법이 나올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제외 규정에 대한 해석은 현재 화장실, 창고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건축 구조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의 경우만 제외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학교 본관동 1층 체력단련실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조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7 | [건명: 교사 시국선언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시국선언에 교원들이 단순 서명을 게시한 것이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원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복종의 의무를 위반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인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 이상 <u>성실히 직무수행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의 행위에 참여하여 <u>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기간 내에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u>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u> <input type="checkbox"/> <u>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어렵다고 판단됨.</u> <input type="checkbox"/> 다만, 그 가담정도(서명게시, 집회참석 등 등)에 따라 징계의 적정성만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됨. |
| 8 | [건명: 직무이행 거부에 따른 고발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육부의 직무이행 요청에 대해 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 사항을 직무유기라 본다면, 대비방안이 무엇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무이행에 앞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이후 직무이행을 하는 것이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추진 중이므로 <u>직무유기라 볼 수 없음.</u> <input type="checkbox"/> <u>현재 진행 중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라 판단됨.</u> <input type="checkbox"/> 신분상 처분은 교육감 권한 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u>직무유기라 볼 수 없음.</u> |
| 9 | [건명: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에 따른 대상기준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가 폐교되고, 그 이후 사립중등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공고를 할 경우, 폐교 당시 근무하고 있는 교사(추천대상)를 공고일 현재 대상학교 교사로 한정 한 것이 채용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가 폐교되어 폐교당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u>특별채용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가 폐교되어 폐교당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u>특별채용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특별채용 공고하면서 공고일 현재 대상학교 교사로 별도 명시한 것은 <u>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u>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0 | [건명: 기간제교사 임금 청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쌍방이 관련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을 때(동 의서 포함), 관련 지침과 계약서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 학교에서 10차례에 걸쳐 계약연장 및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을 계약만료 직전 요구함에 따라 그 동안의 계약사항을 번복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 <input type="checkbox"/>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곧바로 취소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보아 판단해야 하므로 재판 중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계약체결 당시 전제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기 전까지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안의 계약사항을 번복하여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일정 호봉 이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지침상 그 이상의 호봉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 11 | [건명: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재심사 청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명시된 재심사청구 요건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타 징계의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내용이 무겁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 12 | [건명: 사립학교 교장 인사처분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처분에 대해 해당 교장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 교장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후임발령 보충 제한사유를 파면, 해임, 면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이상 그 외의 처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할 것으로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3 | [건명: 교원노조 사무실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판결에 따른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의 후속조치로 교원노조의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적으로 사무실을 점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반 여부 | <input type="checkbox"/> 교원노조가 귀청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결과 반사적으로 위 사무실을 점유하게 된 것일 뿐, 그 기간 동안 귀청이 위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려면 기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귀 교육청이 교원노조에 퇴거를 요청하였는데도 퇴거에 불응한 것이라면 기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교원노조에 귀청이 퇴거 요청하였기에 교원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상태로, 계속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귀청에서 교원노조에 사무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 14 | [건명: 소송 결과에 따른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낙찰배당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시점부터 목적물 반환 시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 임대한 곳을 점유한 것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함인데 임차인이 낙찰배당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그 배당금액에 대해 받은 날부터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15 | [건명: 소송 판결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판결문에 명시된 동시이행절차의 의미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빼고 임차인에게 일부를 지급했을 경우, 임차인이 반환 받지 못한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와 반환 받기 위한 방법의 존재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모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의미임.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령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목적물을 인도 청구할 권원은 없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6 | [건명: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일 기본재산에 대해 추가로 담보제공 허가 가능 여부 | <p><input type="checkbox"/> 담보제공사유가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납에 기인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매수인의 자금유통을 도모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담보대출 후 위치 이전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학교운영의 파행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동일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 허가 불가가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28조는 매도와 담보제공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한 처분허가가 있었던 사유만으로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음. 그러나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과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대체할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형식적으로는 학교법인은 이전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매도허가 받은 학교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집행하고 매수인이 담보대출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제공사유가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잔금을 융통해주기 위한 것이고, 만일 매수인이 3,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재정이 문제되어 학교운영에 지장 초래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이 매도허가 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시 담보제공에 의한 대출을 중복 허가할 경우 공공재산인 학교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추가 담보제공 허가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p>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7 | [건명: 사립학교 교원 인사처분 무효에 따른 인건비 재정 지원 관련 법률 자문] | □ 사립 특수학교 교원 인사처분 무효 소송이 확정된 바, 징계 기간 중 중단된 교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주체의 해당 여부 | <p>□ 「사립학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u>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급했어야함.</u>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무효인 파면처분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원하여야 함.</p> <p>□ 인사처분이 없었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천교육 청에서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u>교육청이 해당교원에 대한 인건 비를 지원함이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u></p> <p>□ 사립학교법, 「인천교육청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등을 볼 때, 사립특 수학교 교원 인건비는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므로 <u>교육청에 서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고 사료됨.</u></p> |
| 18 | [건명: 지방공무원보수업 무 등 처리지침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 사립학교 교원경력 15년 있는자가 사립학교사무직원 5급으 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016.1.27.)을 준용하여 초임호봉획정시 경력 70%인정 후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을 적용하는지, 경력 70%인정하는지, 경력100%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 <p>□ 사립학교 교원경력 15년 있는 자가 사립학교사무직원 5급 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 부 예규 제42호, 2016.1.27.)을 준용하여 초임호봉획정시 <u>경력 70%인정하여 호봉 획정하여야 함.</u></p> <p>□ 사립학교 교원경력 15년 있는 자가 사립학교사무직원 5급 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 부 예규 제42호, 2016.1.27.)을 준용하여 초임호봉획정시 <u>경력 70%인정하여 호봉 획정하여야 함.</u></p> <p>□ 사립학교 교원경력 15년 있는 자가 사립학교사무직원 5급 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행정자치 부 예규 제42호, 2016.1.27.)을 준용하여 초임호봉획정시 <u>경력 70%인정하여 호봉 획정하여야 함.</u></p>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19 | [건명: 교육금고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육금고 약정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기본금리 일방적 금리 인하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본금리 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시 이전 발생시 교육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공예금의 기본금리 조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는 금리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지만 ‘ <u>기준금리</u> ’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input type="checkbox"/>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u>교육감의 해석에 따라야한다고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금고약정서의 금고지정제안사항에 따르면 금리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된 사항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된다면 기본금리도 변동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금고약정서의 금고지정제안사항에 따르면 금리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된 사항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된다면 기본금리도 변동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
| 20 | [건명: 공사대금 관련 원도급 업체 및 원도급 준공금 압류 보관금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채권압류에 대해서도 국세가 우선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국세가 우선한다면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국세도 다른 채권과 같이 법원에 공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국세가 우선 <input type="checkbox"/> 추심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탁은 가능하나, 국세가 우선이므로 공탁 사유가 불분명함. <input type="checkbox"/> 국세가 우선 <input type="checkbox"/> 추심이 가능하나,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국세도 다른 채권처럼 법원에 공탁처리가 가능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1 | [건명: 공사 준공금 정산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 > 체불노임, 하도급직불 > 선금정산, 지연배상금 > 국세·지방세 압류 순으로 정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채권가압류 이전에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시 A사의 채권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하도급 직불대금 우선 지급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업체 노무자들은 채권압류 시 직불 하도급업체를 채무자로 하여 압류가 통지되고 원도급사 노무자 원도급 업체를 채무자로 하여 압류가 들어 올 경우에도 혼합공탁 처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업체가 폐업, 파산 상태가 아님에도 노임, 장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준공 처리 시 부정당제재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지연배상금 > 하자보수보증금 > 선금 정산 > 잔액 지급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직불 합의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압류(국세, 지방세 포함)나 가압류가 되더라도 직접 지급 청구권 우선 됨.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직불 지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체불노임의 경우 노임이라 하여 교육청이 우선 지급할 의무 없음.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공사대금을 가압류나 압류 할 경우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시 법원에 공탁하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 배당됨.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 체불노임, 하도급직불, 선금정산, 지연배상금 간의 순위는 특약이 없는 한 변제기일 순으로 처리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직불대금 우선 지급 가능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 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구비 <input type="checkbox"/> 혼합공탁 처리 <input type="checkbox"/> 계약조건 위반하여 이행한 자(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호)를 근거로 부정당제재 가능하다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2 | [전명: 공사대금 채권 대금 지급 방법 법률 자문] | <p><input type="checkbox"/> 아래 공사대금 지급 관련 대금 지급 우선 순위 여부</p> <p>1. 채권현황</p> <p>가. 채권양도(양수)통지서 : 2016. 8. 12.</p> <p>- 채권양도(양수)일 : 2016. 8. 10.</p> <p>- 채권양도자 : ☆☆☆☆ 주식회사, - 채권양수자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p> <p>나. 자재납품 업체의 대금 직불 요청 : 2016. 8. 23.</p> <p>- 자재납품 협약일 : 2016. 7. 19.</p> <p>다. 채권가압류 : 2016. 9. 2. 이후 2건</p> <p>2. 아래 대금 지급 우선순위 여부</p> <p>△ 공사근로자 직접노무비</p> <p>△ 하도급거래에 따른 자재대금</p> <p>△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상 양수금액</p> <p>△ 채권가압류</p> | <p><input type="checkbox"/> 대금지급 우선순위는 채권양도통지서, 직불요청서 및 가압류 명령서의 송달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정해짐. 채권양수인이 최우선된다고 사료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지급 우선순위를 고민하지 말고 혼합공탁 방법 추천</p> <p>- 참고 사항</p> <p>가. 지급할 공사대금에 한정하여 채권양도가 가장 선순위이고, 이후 발생한 가압류는 무효</p> <p>나. 노무비는 근로자들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수급회사는 귀 교육청에 대해 노무비 상당에 해당 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으므로 양도된 채권 중에는 노무비 미포함, 노무비 직접 지급 가능</p> <p>다. 대금 납품 업체는 하도급법률 상 수급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직불동의서는 의미가 없음.</p> <p>→ 결론, 노무비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 수급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채권양수인에게 모두 지급</p> <p><input type="checkbox"/>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가 계약이행 지체 중에 부도업체로 등록되는 사정을 예상 한 듯 ☆☆☆☆ 주식회사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로 공사금액을 채권양도하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그 보다 이전에 교육청과 ☆☆☆☆ 주식회사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고용된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 교육청과 주식회사 간에 자재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하고, 자재납품업체 자재대금 직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합이므로 공탁</p>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3 | [건명: 계약이행 중 사업 양수·양도로 인한 변경계약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A사는 각급 학교와 유지보수 사업 계약을 체결·이행중 B사에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양수인 B사는 양도인 A사에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고 서비스 지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을 정당한 양도·양수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상대자인 학교장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 <input type="checkbox"/> 사업 양도·양수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을 이유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적조직의 승계가 없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도 않고, 계약 잔류당사자인 학교 측의 동의도 없어 학교 측에 민법상의 계약인수를 주장할 수도 없는 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계약당사자는 위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계약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상대방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특별한 손해를 입거나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
| 24 | [건명: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이전등기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무효를 다투는 소송인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해당 소송은 귀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으로, 증여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다투는 소송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소유권 등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5 | [건명: 매각된 공유재산 내 매립된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입찰 공고문 및 계약서에 명시된 매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이 해당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시효 경과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상 매각조건은 공부상 열람 가능한 사항이나, 관련 법규 같이 일반적인 조건이므로 매수인이 계약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사항까지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할 것으로 교육청이 매립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 기산하면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매각한 공유재산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로 인한 매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폐교건물이 1900년에 철거되었으므로 건축폐기물이 그 무렵 해당토지에 매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민법 및 대법원의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계약서 내용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귀청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상법 제64조에 의거 귀청과 철거업체 사이의 철거계약은 1900년경에 있었고 현재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철거업무수행 공무원 또한 귀청 소속이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 이 경우는 구상할 수 없다고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6 | [건명: 00지구 공유지분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000은 상기 토지의 공유지분자로 현재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무허가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은 금속제 컨테이너 1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현재는 자신 소유 물건을 쌓아 둔 상태인 바,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토지의 공유지분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1항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변상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u>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움.</u> <input type="checkbox"/> 공유지분권자로서,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 할 수 있으며, <u>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 가능함.</u> <input type="checkbox"/> 변상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u>무단점유로 볼 수 없고</u> 자신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u>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다고 판단됨.</u> <input type="checkbox"/> 공유지분권에 의한 점유이므로 변상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u>무단점유로 볼 수 없음.</u> <input type="checkbox"/> <u>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u> |
| 27 | [건명: 서비스 이용 규정 제정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신규 서비스 제공시 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한 이용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할 경우, 이용규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 유무 여부 | <input type="checkbox"/> 법률한 문제점이나 귀책사유는 없으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input type="checkbox"/> 법률의 문제점이나 귀책사유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법률의 문제점이나 귀책사유는 없음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28 | [건명: 준공대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사계약 이행 중 채권양도양수 통지 후 부도업체 등록, 공사 자재업체 직불 동의서 접수 등에 대한 준공금 지급 관련 - 노무비 개별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 - 공사 자재업체의 자재대금 직불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우선 도달하여 공사자재업체도 채권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 전액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해야함.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후 노임 지급 불가하며, 자재 대금 직불동의서보다 채권양수인 우선함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후 노임 지급 가능(노무비에 대하여 한정)하며, 자재 대금 직불동의서 및 직불촉구 통지(내용증명)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자재비 직불 가능함. |
| 29 | [건명: 입찰 개찰 유효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입찰 공고문 상에(입찰자격)이 ‘1회사 1투찰: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이 투찰하는 경우 입찰자가 대리점의 관할 구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의 조항을 근거로 개찰 전 참가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개찰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 <input type="checkbox"/> 1회사 1투찰 참가자격에 반하는 개찰에 해당, 사전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찰 무효 <input type="checkbox"/> 본사의 확인서를 추후 제출하면 되므로 개찰 유효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입찰자격 요건에 위배되어 개찰 무효 |
| 30 | [건명: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 지원 및 운영실태 특정 감사 실시 후, 감사처분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해당 사립학교에 통보하였으나, 해당 학교가 이의제기에 관한 재심의 요청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징계시효 도달 여부 | <input type="checkbox"/> 당시 설립자가 제기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는바, 그에 대한 판결이 없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이 적용될 성질은 아니며, 위 소는 취하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가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임. 단,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사실이 공금 및 유용으로 판단된다면 이 경우 5년이며 징계요구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징계시효는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8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그 시점부터 2014. 12.경까지 정지되었고, 다시 그 후부터 지금까지 12개월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때, 그 동안 총 20개월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감사처분이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현재부터 역산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귀청로서는 다시 징계의결요구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31 | [건명: 인쇄물·인터넷 광고 교습비등 미표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관련 행정처분 적용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별표 6 기타학원 불법 운영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게시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 제23중 제1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교습비 등에 관한 미표시, 미게시, 미고지의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을 뿐,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 행위에 대해 조례보다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임. <input type="checkbox"/>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별표 6 기타학원 불법 운영사항에 해당됨. |
| 32 | [건명: 학원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원 설립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임원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여야 하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취임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임원이 이사로서의 취임상태의 효력은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임원이 법인에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사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이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법인 등기에 사임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사임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33 | [건명: 학원설립 신청에 따른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판매시설(상점)에서 용도변경 없 이 학원(500㎡ 미만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학원은 해당 업무복합시설 관련 건축물대상장 용도 및 지 구단위계획에 고시되지 아니하여 용도 변경없이 학원 설립 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판매시설(상점)에서는 용도변경 없이 학원설립은 어렵다고 사료됨. (관련 고시에도 허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용도변경 없이 학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변 경행위에 해당되며, 처벌의 대상이 됨. (관련 고시에도 허용 하지 않음.) |
| 34 | [건명: 사립유치원 법률 위반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아동관련기관의 설립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 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으로 운영 중인 아동 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상에 “설립자” 와 “운영하는 자” 를 별개 의 개념으로 아동관련기관을 설립한 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운영하는 자” 에 설립자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 서 설립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상에 설립자와 운영하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하는 자” 에는 아동관련기관을 현 재 운영하고 있는 자만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한 아동관련기관의 설립자가 운영하는 자가 아닌 것으 로 확인되었다면 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상에 설립자도 “운영하는 자” 로 보아야 한 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한 아동기관의 설립자가 동법 제 29조의3 제1항에 해당된다면 제29조의5 제2항과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 요구할 수 있다 고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35 | [건명: 공사대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제3채무자인 우리교육지원청이 공사대금잔액에서 원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에 공탁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모두 공제 후 공탁 가능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모두 공제 후 공탁 가능 <input type="checkbox"/>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모두 공제 후 공탁 가능 |
| 36 | [건명: 사실조회서 회보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실조회서 회보에 관한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실조회서 작성시 관련 사실에 기인하여 작성해야함. |
| 37 | [건명: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행정청의 회의록 공개 여부 |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에 한하여 용합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하나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공개시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만약 부분공개를 한다면 개인 식별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
| 38 | [건명: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계약서의 목적을 변경하여 변경 계약하는 것이 계약의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및 대부계약 갱신시 대부 당사자만 동일하고 계약사항(목적, 면적 등)이 변경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계약의 갱신은 기존계약의 내용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함. 목적변경 또는 면적의 변동이 과다하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갱신이 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의 갱신이란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계약의 목적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또한 계약의 목적, 면적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의 갱신은 불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처음 사용목적과 다르므로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또한 계약의 목적, 면적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의 갱신은 불가능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39 | [건명: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관련 법률 자문] |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 체육활성화를 위해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건립 후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p>□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u>해당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 이라는 요건구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시도교육감은 재량의 여지없이 무상대부하게 됨.</u> 또한 동법 제5조 제3항의 감액을 살펴보면 1호의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감액의 대상이 되나 감액여부는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대부계약으로서 면제가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재량규정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이라 할 것임.</u></p> <p>□ 폐교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일반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건에서의 폐교재산 사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u>폐교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사료됨.</u></p> <p>□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u>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u></p> |
| 40 | [건명: 공사비 회수를 위한 소송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 A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계약에 따라 A업체는 공계를 완료하였으나, 종합감사에서 이 공사내역이 실제시공내역과 상이함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과 지급된 공사비를 소송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p>□ 과지급된 공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가능함.</p> <p>□ A업체를 상대로 미시공 공사비 반환 및 재시공을 요구하는 소를 구할 수 있음.</p>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41 | [건명: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공고기관과 A업체와의 이견을 보였고 지역제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지 못했다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입찰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
| 42 | [건명: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 업체에서 제3자의 계약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 요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약관련 민원접수로 인해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기관이 이해관계 업체에게 ‘계약 자료 및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적인 목적만으로는 공개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해관계 업체에게 계약자료 및 서류일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 43 | [건명: 민원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의 민원접수 및 답변 의무 <input type="checkbox"/> 시교육청 감사 처분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2항 적용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소송 준비를 위한 업체에 대한 향후 질의에 답변 의무 | <input type="checkbox"/>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문서에 의한 질의민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질의민원으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답변의무 없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사항이므로 위 제2호를 들어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향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질의한데 대해 답변 의무 없음. |
| 44 | [건명: 교직원 복무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휴직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관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면, 휴직한 교직원의 복직을 권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이 두 사안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 모두 지켜야할 규정으로 우선순위 없음. <input type="checkbox"/> 「식품위생법」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 규칙 모두 지켜야할 규정으로 우선순위 없음. 다만, 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귀 기관은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45 | [건명: 학교발전기금 기탁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 전제로 협약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발전기금을 기탁받음에 있어 학교측에서 협약을 동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학교발전기금 관련 협약을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26호부터 제30호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별도의 양식이 있으므로 협약서와 함께 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46 | [건명: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관련 하여 가해 학부모에 대한 피해교사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및 방법과 사건 이후 학부모의 지속적인 행동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방법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가 학교 내에는 들어올 수 없으므로 굳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만일 학교 외에서도 피해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음.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 교사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해야 함. 또한 학교에서 교문출입금지 조치를 한 상태이므로 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장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형사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음. |
| 47 | [건명 : 상업적 교육 홍보자료 제작시 초상권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상업적 교육자료 홍보 동영상 제작시 학생 및 학교의 초상권 문제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받거나,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시설의 촬영 허가를 받은 경우 문제없다고 판단됨. |
| 48 | [건명 : 투서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교직원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일정 행동을 요구하는 익명의 투서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에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방법 | <input type="checkbox"/>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교육청에 통보하고, 내용증명의 발신자를 강요죄로 고소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49 | [건명 : 사법기관 조사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하던 중, 조사 받는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행위에서 참고인의 과오가 발생하였다면 참고인도 공모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으로서 아는 한도에서만 진술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귀교 측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가담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u>단순한 행위가 과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귀교 측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u> |
| 50 | [건명 : 학교 시설물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교직원과 민원인에게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주체와 보상의 범위에 대한 자문 | <input type="checkbox"/> 학교소유자가 대물배상을 해줘야 함. |
| 51 | [건명 : 학교시설물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소유 입목죽이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어 민원인 대물이 파손됨에 따른 학교배상 책임 여부 및 자연재해로 인한 배상시 공공기관의 민원인 배상 비율 | <input type="checkbox"/> 도로로 점유 중인 토지이나 학교 영조물임으로 해당 수목의 설치 또는 <u>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학교 배상 책임 있음.</u> <input type="checkbox"/> 자연력에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 <u>해당 사건은 전날 예비특보가 내려진 바, 불가피한 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 해야한다고 사료됨.</u> <input type="checkbox"/>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므로 학교 소유이며, 관리책임 또한 학교에 있으므로 <u>학교 배상 책임 있음.</u> <input type="checkbox"/> 자연재난이라도 <u>자동차 소유자 과실비율 20%~30% 공제 후 배상책임 있음.</u> <input type="checkbox"/> 입목죽에 대한 소유자인 <u>학교 책임과, 도로에 대한 관리청인 지자체가 함께 50:50비율로 배상책임 있다고 판단됨.</u> <input type="checkbox"/> 지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u>민원인 과실 30%를 공제하고, 학교와 지자체가 35:35% 배상책임 있음.</u>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52 | [건명 : 임차계약해지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통학차량 미신고 사유에 대한 책임과 계약해지 절차에 대한 적절성에 따라 A업체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통보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동 건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제기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귀 기관이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A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처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보여 귀 기관과의 계약체결 당시까지 신고가 늦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정으로 보면 귀 기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 53 | [건명 : 용역계약만료 통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2015학년도 0000 처리 계약서 제7조 계약만기 1개월 전 까지 쌍방 계약이 만료되었음 통보한다(팩스, 전화, 안내문 발송, 방문 등 통보가 없을시 자동 연장의 의미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갑(학교)이 계약만료 7일전에 전화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자, 을(폐식용유업체)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1개월 전이 아니므로 1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에서 유리한 내용이 기재된 점, 계약기간을 2016.2.29.까지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을 비추어 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폐식용유 처리계약은 2016.2.29.일자로 종료된다고 봄이 합리적임. |
| 54 | [건명 : 계약 체결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도서 소액수의 공고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의 확인서 미제출을 사유로 1순위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공고문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1순위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고는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순위 업체는 취소된 공고문의 무효를 들어 낙찰된 금액이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주장하기에 취소된 공고문의 법적 효력과 계속적인 거부시 지방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취소된 공고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고문은 유효하게 되었으며, 1순위업체와는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사료됨. |
| 55 | [건명: 공사비 회수를 위한 소송 가능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A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계약에 따라 A업체는 공계를 완료하였으나, 이 공사내역이 실제시공내역과 상이함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과 지급된 공사비를 소송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A업체를 상대로 미시공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구할 수 있음.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56 | [건명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동창회장의 동의 없이 학교가 동창회비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동창회장의 반환 요구로 해당 학교 교직원의 사비로 기탁된 동창회비를 동창회장에게 반환하였다면, 해당 학교 교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은 동창회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
| 57 | [건명 : 시간강사의 교사내 부상에 대한 공상처리 여부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시간강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가던 중 본인의 실수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공상처리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시간강사 개인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되나, 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중이었으며, 다친 장소가 학교 건물 내이므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u>공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됨.</u> |
| 58 | [건명 : 계약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학부모의 손해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본 계약은 특정물인도채무의 이행지체로서 계약상대자가 늦게 이행하더라도 이행한 이상 <u>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u> ,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계약일반조건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아울러 「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업체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u>해지는 불가능하며, 지연배상금은 청구가 가능함. 아울러 학교는 업체의 지연배상을 청구하기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함.</u> <input type="checkbox"/> <u>계약이행으로 계약해지 불가능함. 지연배상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지연배상금이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납품일 지연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u> |

| 연 번 | 구분 |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59 | [건명 : 기간제교사 급여채권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에게 급여채권 법원 명령문이 송달되어 퇴직전까지 급여를 압류하고 있었음. 이후 해당 기간제교사가 본 기관에 재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기존에 송달된 법원 명령문이 유효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송달 당시 근무하고 있던 고용계약에 기하여 받게 될 급여채권에 한해 미치기 때문에 퇴직을 하였다가 새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채권에는 기존 고용계약시의 <u>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u> |
| 60 | [건명 : 공유재산 매각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에서 진행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를 근거로 하여 80/100을 최저한도로 매회 10/100 금액만큼 낮춰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속 유찰시 낮춰진 금액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위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에 의거하여 시행 할 수는 <u>없다고 판단됨.</u> |
| 61 | [건명: 신입생 합격자 명단 공지 관련 법률 자문] | <input type="checkbox"/> 신입생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에 있어 교직원의 잘못으로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담당교사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학교의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위자료만이 인정될 것이나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전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합격자 공고 잘못을 사유로 불합격자가 합격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안 발생 경위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잘 설명하고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추후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